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8월 2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송현민(02-2110-4641), 이병율 사무관(4646)

3MW이하 발전사업 허가, 시·군·구에서도 가능

- 광역시·도에 위임된 발전사업 허가를 시·군·구에 재위임 -

□ 아주 작은 규모의 발전(發電)사업이라도 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광역시·도청까지 찾아가야 했지만, 이제 시·군·구청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광역시·도에 위임한 발전사업 허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기초지자체로 재위임토록 한다고 밝혔다.

○ 재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'사업의 허가'와 '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' 등이다.

○ 다만, 시설 용량 중 어느 정도 범위에서 재위임할 것인지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광역지자체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. 예를 들어 경기도는 1천 킬로와트 이하를 재위임 범위로서 고려하고 있는 반면 기타 광역시·도는 2백 킬로와트에서 3천 킬로와트까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.

□ 이러한 재위임 조치는 최근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광역시·도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들의 원거리 방문이 되풀이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.

○ 이는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'정부3.0'의 취지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최접점으로 민원창구를 이동시켜 기업활동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려는 의지로 해석된다.

□ 2012년부터 '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(RPS)'가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발전사업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.

○ 산업부에 따르면 광역시·도가 허가한 소규모 발전사업 수가 2011년 1천 103건에서 2012년에 2천 168건으로 96.5%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81.4% 증가한 1천 747건을 기록했다. (상세통계 '붙임' 참고)

【 광역지자체 발전사업 허가 연도별 추이】



○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RPS로 인해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,

- "이번 조치로 최근 50여일까지 늘어난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다"고 기대했다.

☞ RPS(Renewable Portfolio Standard) : 50만㎾ 이상 대형발전사에게 전력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(자가발전 또는 구매)하도록 의무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이병율 사무관(☎ 02-2110-464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붙임> 광역지자체별 발전사업 허가 현황 1부. 끝.

광역지자체별 발전사업 허가 현황

(단위 : 건수)

구 분	'12년 / '13년 상반기 건수,(KW)	2012년(A)	2011년(B)	2010년	A / B (%)
경기도	106 / 106 (8,577 /12,128)	280	65	56	430
강원도	45 / 30 (6,061/6,356)	101	69	40	146
충청북도	59 / 96 (8,721/7,554)	140	103	35	136
충청남도	53 / 64 (16,614/4,931)	104	35	47	297
전라북도	285 / 836 (33,992/122,266)	759	358	144	212
전라남도	103 / 187 (14,184/42,719)	225	119	52	189
경상북도	140 / 135 (42,017/23,534)	140	102	65	137
경상남도	66 / 101 (17,327/146,124)	218	192	20	114
서울특별시	3 / 31 (120/10,130)	30	6	9	500
부산광역시	25 / 21 (10,154/8,933)	42	8	2	525
대구광역시	-	21	7	4	300
대전광역시	5 / 8 (165/1,663)	4	5	3	80
울산광역시	2 / 9 (880/3,252)	3	2	0	150
광주광역시	21 / 41 (1,267 / 5,140)	39	21	6	186
인천광역시	27 / 15 (3,25 5/ 4,706)	39	6	0	650
제주도	23 / 67	23	5	13	460
계	**963 / 1,747**	**2,168**	**1,103**	**496**	**197**

* 1,000kw 미만인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약 95% 이상 점유